이 문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의 문서입니다.

정식 문서는 보건소가 발행한 일본어 문서입니다.

 보제　　　 　호

③

년　　월　　 일

 님

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　 보건소장

입원권고서

귀하는 감염증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(이하 [법]이라고 함.) 제6조 규정의 결핵에 감염된 것이 판명되었습니다.

따라서, 법 제19조 제1항(법　제 26조에 준함)의 규정에 근거하여 하기와 같이 입원을 권고합니다.

또한, 이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는 법　제19조제3항(법　제26조에 준함)의 규정에 근거하여 입원조치를 실시합니다.

|  |  |
| --- | --- |
| 1 | 입원 의료기관 |
|  | 1. 명칭
2. 주소지
 |
| 2 | 입원해야 하는 기간 |
|  | 년　　　월　　　일까지 입원하십시오. |
| 34 | 입원 기간년　　　월　　　일부터　　　　　년　　　월 　일까지입원 권고 이유 |
|  | (1) | 결핵의 만연의 방지하기 위해 |
|  | (2) | 결핵 증상이 인정되기 때문에 |
|  | 　　　  |
| 5 | 기타 |
|  | 귀하는 법　제22조 제3항(법　제26조에 준함)의 규정에 근거하여 퇴원의 요구가 가능합니다. 그 결과,해당 감염증의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, 또는 해당 감염증 증상의 소실이 확인된 경우는 법　제22조 제1항(법　제26조에 준함)의 규정에 근거하여 입원을 종료합니다. |
|  | 또한, 법　제24조 2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입원 중 귀하가 받은 대우에 대하여 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민원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. |

담 당：